

『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,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장난감도서관의 목적, 정의, 명칭 및 위치,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4조)
- 회원의 가입과 연회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10조)
-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 ~ 제16조)
- 지도·감독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아동복지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2016년 예산에 220,000천원(도비 12,750, 시비 207,250) 반영되었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,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법인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아동복지법」의 기본취지 등을 반영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난감도서관을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 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